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76호 2018. 8. 8(수)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583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7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 2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

다.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

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세무1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 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국장·기획예산실장·홍보미디어과장·재무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채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
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121조의2제4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

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과세표준에서 감면

제5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과년도”를 “지난 연도”로 하고,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며, 같

은 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서구세입률”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이하 “구세입”이라 한다)을”로 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을 “그 밖에 관계 법령”으로 하고, “기간등 해당부서”를 “기간 등 해당 부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구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로 하며,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에도”로 하며,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기준에 의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과년도 미수액중”을 “지난 연도 체납액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징수액”을 “그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100분의 5”를 “100분의 5(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상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를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를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로 하고,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따른 포상금은 미지급”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보한 자”를 “제보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이외의 부분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미수금징수”를 “체납액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상금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종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2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당해위원”을 “해당 위원”으로 한다.

제5조 중 “과년도”를 “지난 연도”로 하고, “기록, 정리”를 “기록·정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포상금지급”을 “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의 각 호에 따라”로 하며, “하는자는”을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

른”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며,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으로 하고,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하며, 단서 중 “다수”를 “여러 명”으로 하고, “일괄이체후”를 “일괄이체 후”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를 “허위 또는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가산한다”를 “가산(加算)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583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금고지정 시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7점)로 평가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흥 농수산업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3 (7) (6) (7) (3)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5 3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7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4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장 최근자료 기준)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3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1) 총자본비율 (안정성, 7점)
 - (2)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3)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4)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3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시 대책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7점)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7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과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강화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9점)**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4점)

-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서구 금고”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로 한다.

제3조 중 “징수조례”를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이라 한다)”를 “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평가배점					평점
구분	평가지표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서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18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심사기준	위원별								합계	평균
총 계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건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자치단체 대출금리										
다. 공공예금 적용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주민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 협력사업계획										